법 제 처

(720-4638)

국무총리 훈령 제188호 1983. 6. 20.

소관부처 : 법제처

제 목 : 법령안입법예고제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훈령

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국민의사에 바탕을 둔 입법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정책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83년 5월 21일 대통령령 제11133호로 제정 ·공포된 법령안입법예고에관한규정이 1983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그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훈령하니 입법예고제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.

다 음

1. 법령안입법예고에관한규정(이하 "규정"이라 한다) 제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중요분야의 법령은 동규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외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고하도록 할 것.

2. 예고된 법령안에 관하여 제출된 의견은 동규정에 따라 그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법령안을 보완하여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,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

이해관계에 치중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할 것.

3. 입법예고제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국민에게 그 의견제출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되 이로 말미암아 입법추진절차가 지연되어 국가정책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입법예고와 병행하여 다른 입법절차는 계속 추진할 것.

4. 입법예고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중요한 사항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법령안의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, 입법예고를 함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할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주도록 하여야 하며, 그 내용과 취지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쉽게 예고하도록 할 것.

5. 법제처장은 입법예고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각 원 ·부 ·처 ·청에 통보하고, 입법예고에 관한 업무의 지원 ·총괄에 만전을 기할 것.

6. 내무부장관 ·문교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도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입법예고제의 취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마련에 있어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것.

국 무 총 리